

울산광역시의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울산광역시의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6년 8월 28일

울산광역시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 분야	임용직급	인원	근무 기간	근무 부서	주요 담당업무
홍보·영상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주 35시간>	1명	2년	의 회 사 무 처	◦ 뉴미디어, SNS 영상 채널 운영 전략 수립 및 운영 ◦ 유튜브용 홍보영상콘텐츠 기획·제작 ◦ 의정활동 영상 콘텐츠 제작(기획·촬영·편집) ◦ 영상자료 아카이브 구축 및 관리 ◦ 그 밖에 의정활동 홍보 및 영상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예산·재정 분석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주 35시간>	1명	2년	의 회 사 무 처	◦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에 대한 연구·분석 ◦ 예산 및 재정 관련 제도·정책 현안 분석 ◦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재정 분석 ◦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및 중·장기 재정 소요 분석 ◦ 기타 예·결산 관련 의원 또는 상임위원회 요구사항에 대한 조사분석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2.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 「울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3. 응시자격(기준일: 최종시험예정일)

가. 공통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 거주지 및 성별 제한없음
-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8. 12. 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
 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
 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
 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
 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
 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
 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
 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마. 삭제 <2022. 1. 4.>
 바. 삭제 <2022. 1. 4.>
 사.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
 관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
 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
 하 “협회”라 한다)

나. 자격요건

임용예정분야	응시자격요건
홍보·영상	☐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 학사학위 취득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 경력)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회, 지방의회,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에서 영상 콘텐츠 기획·제작(촬영·편집 등) 실무경력 * 공공기관 : 재정경제부 「2026년도 공공기관 지정 고시」 [우대사항]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컴퓨터그래픽기능사(舊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ACP(舊 ACA)-Adobe Premiere Pro 또는 After Effects, 한국영상전문인 (촬영 또는 편집) 등 영상 제작 관련 자격증 소지자
예산·재정 분석	☐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 학사학위 취득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 경력)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회, 지방의회, 공공기관*, 법인 등에서 행정, 세무, 재정, 회계 등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 공공기관 : 재정경제부 「2026년도 공공기관 지정 고시」

□ 기본사항

-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 경력의 범위

- **관련분야 근무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담당업무는 관련 직무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것
 - 경력증명서 미제출시 불인정되며 불분명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전임 근무의 경우 경력의 전부를 인정하고, 시간선택제 근무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주 40시간 기준)
 - 전임(상근, 주40시간 근무) 근무의 경우 경력의 전부를 인정
 -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
-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됨
- '경력' 요건의 **경력 계산 시 '공무원경력'과 '민간경력'을 합산할 수 없음**
(예시) 관련분야 실무경력 '공무원(임용예정계급상당) 경력 1년'과 '민간경력 2년'을 합산하여 '관련분야 실무경력 3년'으로 인정되지 않음

4. 보수 수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임용직급 연봉한계액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책정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비 고
6급(상당)	86,606천원	57,708천원	

* 상기 연봉액은 주 40시간 금액이며, 연봉 하한액의 120% 범위 내에서 임용예정자의 자격, 능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책정한 연봉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주 35시간)에 비례하여 산정

- 연봉 외 급여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희망시 가입 가능(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임용예정 분야와 관련된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관련분야 경력, 근무경력 직무연관성 등 심사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공통사항)**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에 따른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 (평정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홍보·영상 분야)**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자 본인이 직접 기획·촬영·편집한 영상 콘텐츠(지정 주제)를 지정 일자까지 제출 요구 예정이며, 면접 위원 참고 자료로 활용
 - ※ 영상 콘텐츠 주제, 제출일자, 제출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계획 공고 시 안내 예정
 - ※ 본인이 직접 제작한 콘텐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예산·재정분석 분야)** 면접 당일 직무과제 보고서 작성 후 면접위원 참고 자료로 활용
 - ※ 자세한 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계획 공고 시 안내 예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선발 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
-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6. 시험일정

구 분	시 험 일 정
시험공고	'26. 8. 28.(금) ~ 9. 7.(월)
응시원서 접수	'26. 9. 8.(화) ~ 9. 10.(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6. 9. 30.(수) 예정
면접시험	(예산·재정분석 분야) 10. 8.(목) 예정 / (홍보·영상 분야) 10. 15.(목) 예정
최종합격자 발표	'26. 10. 22.(목) 예정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https://www.council.ulsan.kr>) '의회소식 - 고시/공고'란에 게재
- 면접시험의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 가. 원서교부 :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s://www.council.ulsan.kr>)
 “의회소식 - 고시/공고”란 해당 공고의 제출서식 다운로드
- 나. 접수기간 : '26. 9. 8.(화) ~ 9. 10.(목) 09:00 ~ 18:00(점심시간(12:00~13:00) 제외)
- 다. 접 수 처 : 울산광역시의회 총무담당관 인사교육팀(시의회 3층)
- 라.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본인 또는 대리인 접수 가능)

◆ 등기우편주소 : (우)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신정동), 울산광역시의회 총무담당관
 인사교육팀 채용담당자(052-229-5182)

- 등기우편 접수자는 반드시 사전에 담당자(☎052-229-5182) 유선으로 통보 바람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등기우편 접수 시 우체국 통상환증서(응시 수수료)를 동봉하시기 바랍니다. *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 불가능

※ 우편접수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전까지 휴대폰SMS 또는 이메일로 개별 통보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본인확인(신분증 대조) 후 면접시험장에서 배포 예정

8. 제출서류

※ 제출서류 편철 시, 스테이플러, 양면인쇄 사용금지

구 분	내 용
1. 제출서류 목록표 1부 (별지서식 제1호) : 필수	○ 제출여부 항목에 'O' 표시
2.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 필수	○ 응시수수료 : (6급) 7,000원 수입증지 부착 - 울산광역시 수입증지 첨부(구입처 : 울산시청 본관 1층 경남은행) - 우편접수 시 가까운 우체국에서 해당 금액의 '통상환증서' 구입하여 동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3.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 필수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제출 - 증빙서류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4.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 필수	○ A4 2매 이내로 작성

구 분	내 용
5.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5호) : 필수	○ 별도 양식 없으며 A4 요약서 1매 + A4 3매로 작성(총 4매 이내)
6. 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 (별지서식 제6호) : 필수	○ 해당 사항만 작성
7. 졸업(학위)증명서 1부 : 필수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인터넷 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 대학교(전문학사) 이상은 대학교, 대학원 졸업(학위)증명서 모두 제출 ○ 석·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학위 논문요약서 1부 제출 <별지서식 제6호> - 논문 표지 및 목차, 서론 사본 각 1부(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 ○ 최종학력이 고교 이하인 경우 최종 졸업증명서 제출 ○ 해외 학위의 경우 반드시 번역문(공증필) 첨부 - 필요시 최종합격자는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제출
8. 경력(재직) 증명서 1부 : 필수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 증명서에는 근무기간·부서·직책·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발급기관 직인 날인 및 발급담당자 성명·연락처 반드시 기재 ※ 임용 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 주 40시간 전일 근무가 아닌 시간제로 근무한 경우 주당 근무시간 명시 ○ 법인 및 단체에서 근무한 경우 증빙 서류 첨부(법인사업자등록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 가능 - 보완서류 외 '폐업사실확인서', '4대보험 자격득실이력 확인서' 및 '소득금액증명서'를 추가로 필수 제출하여야함.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 경력증명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참고 서식 활용
9. 근무여부 확인을 위한 경력 증빙서류 : 필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 근무경력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소득금액증명서, 근로계약서, 금융기관 보수입금내역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경력이 인정될 수 있음 ○ (해당자에 한함) 폐업자 정보 사실 증명서 1부 - 제출한 경력이 폐업회사인 경우, 국세청의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추가 제출
10.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7호) : 필수	○ 자필 서명 필수

구 분	내 용
11.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8호) : 필수	○ 자필 서명 필수
12. 주민등록초본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9호) : 필수	○ 남자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제출 시, 병역사항 포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제출 시, 자필 서명 필수
13. 기타 모집직위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 및 직무성과 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하는 자료 : 해당자에 한함	○ 직무와 관련된 수상·상훈 실적, 연구실적, 어학능력, 관련분야 자격증 등 ○ 연구논문은 논문표지 및 제목, 발표자가 표시된 페이지 사본 제출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논문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첨부하여 제출

9. 안내 및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는 가능할 수 있으나, 심사 과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원본 제출된 증명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 제출서류 중 확인이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서류전형 결과 적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을 경우 포함)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83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같은 영에 의한 시험, 그 밖의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전형을 거쳐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울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울산시의회 채용담당자(052-229-5182)에게 문의 바랍니다.